C - 29 - 2017

- (10) 수직보호망의 긴결재로 로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고리 구멍마다 로프가 통과하여 지지대에 감기도록 하여야 한다.
- (11) 통기성이 적은 수직보호망은 예상되는 최대풍압력과 지지대의 내력을 검토 하여 벽이음을 보강하고, 벽이음을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경우에는 가설 구조물의 전도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.
- (12) 기타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구조물의 단부,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빈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5. 수직보호망의 관리기준

- (1)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중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는 보수, 교체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(가) 긴결부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
 - (나) 폭우, 강풍이 불고 난 후에는 수직보호망, 지지대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
 - (다)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한 경우에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 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고,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
 - (라) 수직보호망에 붙은 이물질 등은 깨끗하게 제거
 - (마) 자재의 반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직보호망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
 - (바) 낙하·비래물, 건설기계 등과의 접촉으로 수직보호망이나 지지재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
- (2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직보호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(가) 수직보호망의 방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
 - (나) 보수가 불가능한 것
- (3) 수직보호망은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기간, 사용횟수 등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